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공  보

제855호 2014년 5월 2일(금)

공 고

○ 속초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2

회 람									
-----	--	--	--	--	--	--	--	--	--

발행 : 기 획 감 사 실 (전화 : 639-2223, FAX : 639-2106)

속초시 공고 제2014—299호

「속초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일

속 초 시 장

속초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2013. 12. 12 「속초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의 공포·시행과 관련하여 보조금 지원한도, 지원신청 자격, 대상지역 선정방법, 선정지역의 취소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과 기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가구당 지원할 수 있는“보조금 지원 한도액”에 대하여 규정 (안 제3조)
- 나. 지원신청 자격기준 명시 (안 제4조)
- 다. 신청지역에 대한 위원회 상정 및 제외, 선정시 고려사항 등 대상지역 선정방법 규정 (안 제5조)
- 라. 선정된 지역의 취소 근거 마련 (안 제8조)
- 마. 공사비 산정기준 및 공사시공 등에 대하여 규정 (안 제10조, 안 제12조)

3. 자치법규안 : 붙임

4. 의견제출

가. 이 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희망일자리추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보내실 곳

- 주 소 : 우 217-701 속초시 중앙로 183 (중앙동469-6)
속초시청 희망일자리추진과(에너지관리팀)
- 전 화 : 033-639-2375
- F A X : 033-639-2465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시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희망일자리추진과 주무관 서영애(033-639-237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지역”이란 속초시 단독주택 지역을 말한다.
2. “단위사업”이란 단독주택 지역 중 도시가스 공사를 신청한 지역을 말한다.
3. “가구”란 도시가스 난방용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
4. “수요자”란 도시가스를 사용하고자 사업을 신청한 자 또는 대표자를 말하며, 단독주택 지역 내 영업·원룸·업무용 등 복합용도 신청가구는 포함한다. 다만, 순수 영업·업무용으로 신청하는 곳은 제외한다.
5. “주민 분담금”이란 단위사업의 공급관 공사비에 대한 주민부담금으로서 「도시가스사업법」 및 강원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이하 “공급규정”이라 한다)에 의거 산정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보조금 지원한도액) 조례 제6조에 따른 지원금액은 주민 분담금의 50 퍼센트 범위 안에서 가구당 최고 2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신청) ①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단위사업별로 대표자를 선정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보조금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도시가스 공급 심의에 필요하여 시장이 요구하는 자료

② 신청자격은 도시가스 인근 배관으로부터 신규 공급관 설치가 필요한 단위사업별 지역으로서 동시 신청 수요자가 공급관 연장 100m당 3가구 이상

이고 50가구 미만인 지역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보조금 지원 지역으로 선정된 후 취소된 지역은 제외한다

제5조(선정방법) ① 시장은 수요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단위사업별 신청지역에 대하여 사업자의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를 통한 실행품의 설계 후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추진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을 아니할 수 있다.

1. 가스의 수급 또는 공급시설 상황 등과 관련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나 신규 공급관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공급가능 여부를 사전 협의하지 않은 지역의 경우
2. 「도시가스사업법」 또는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가스 공급 시설에 대한 공사가 제한되어 있을 때
3. 가스 사용 신청 장소가 철도, 상·하수도, 하천, 암반 등 지형이 특수하여 가스 공급 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시설의 안전 확보가 곤란한 경우
4. 재개발지역 및 도로굴착 불허구간(도로포장 및 덧씌우기 공사 후 3년 미경과 지역)

③ 위원회는 사업자가 제시한 의견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지역을 선정한다.

1. 최소 투자로 여러 가구가 혜택을 받는 지역
2. 단위사업 규모가 큰 지역
3. 도시가스공급이 용이한 지역으로서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6조(사업타당성조사서 작성) 사업자는 시장이 요청하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업타당성조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선정통보)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선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선정지역의 취소) 제5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선정된 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지역을 취소할 수 있다.

1. 재개발지역으로 확정된 경우
2. 신청 시와 비교하여 시공 시 사업물량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
3. 신청 가구수의 60퍼센트 이상 찬성으로 취소 요구한 경우

제9조(이의신청) ① 선정여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내용을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공사비 산정) ① 공사비 산정은 사업자가 실행품의 기준으로 상세 실시 설계하여 수요자가 알기 쉽게 작성한다.

② 그 밖의 관련사항은 공급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원단위 미만 처리) 보조금 산정결과 1,000원 미만의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단위를 절사한다.

제12조(공사시공) ① 제5조에 따라 선정된 단위사업은 사업자의 공사(공급) 계획에 따라 시공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간 공사(공급) 계획을 속초시에 매년 3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보조금 교부신청의 위임) 단위사업별 신청자는 동 사업의 보조금 교부신청 및 수령에 대한 모든 권한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업자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제14조(보조금의 신청) ① 사업자가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보조금 교부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2. 공사계약서 사본 1부
3. 수요자 부담의 주민분담금 중 시 보조금을 제외한 주민자부담 납부확인

서나 영수증 사본 1부

4. 시공감리필증이나 준공검사 조서 등 공사 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위임장 (별지 제3호 서식)

제15조(보조금의 집행) 시장은 보조금 지급 시 공사완료 확인을 거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사업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급한다.

제16조(보조사업의 수행사항 보고) 사업자는 보조사업 수행결과를 단위사업 별로 준공 후 30일 이내에 사업비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공급, 안전 등 기타사항)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가스사업 법」 및 공급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신청서

신청인	①단위 사업명			
	②성명(대표자)		③생년월일	
	④현 주소	(전화 :)		
⑤가 구 수				
⑥공급받을 장소		공사시점: 속초시 로 길 호 (동 번지앞) 공사종점: 속초시 로 길 호 (동 번지앞)		
⑦배관연장		M		

「속초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제5조,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속초시장 귀하

구비 서류	1. 위치도 1부 2. 기타 도시가스 공급 심의에 필요한 자료
비 고	1. 단위사업별로 대표자를 선정한 후 뒷면 서식을 사용하여 지원대상자의 서명을 모두 받아 제출합니다.

(뒤 쪽)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신청자

연번	신청자 (세대주)	생년 월일	주 소	건물소유 여 부	연 락 처	서명 또는 인	비고 (계량기)

※ 여백 부족 시 별지 작성

사 업 타 당 성 조 사 서

신청인	대표자 성명		주소	
	단위 사업명			
사업명		○○○○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사업		
보조사업의 목적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 보급 확대		
사업량	가구 수	가구		
	공급배관	m(Ø - m)		

사 업 비 내 역

총사업비 (천원)	사업자 투자금	주민분담금			비고
		소계	주민자부담	보조금	
타당성 조사결과					

년 월 일

사업자 (인)

속초시장 귀하

구비 서류	1. 현장 위치도 1부 2. 사업지구 도면 1부 3. 토지사용승낙서 (사유지 경유 시에 한함) 1부
-------	---

위 임 장

○ 위 임 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피위임자 (사업자)

- 법 인 명 : (법 인 번 호 : -)
- 대 표 자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위임사항

- 위임장 용도 : ○○○○년도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공사
주민분담금 중 보조금 교부신청 및 수령용
- 위 임 내 용 : ○○○○년도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공사 주민분담금
중 보조금 전액
- 금 액 : 금 원정(W)
- 지 급 계 좌 :

상기 피위임자에게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보조금 교부 신청 및 수령
에 관한 일체의 모든 권한을 피위임자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일자 : 년 월 일

위 임 인 : (인)

속 초 시 장 귀하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교부신청서

신 청 자	상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공 사 명 (단위사업명)					
배 관 재 질 및 길 이		총공사길이		공사착공일	
				완성검사일	
				가스공급일	
공급관설치 사업가구수	총 가구수	가구	용도별	단독 주택용 :	가구
				그 밖의 가구 :	가구
보 조 금 신 청 내 역	신 청 액	금 원			
	사 업 비 내 역	• 총 공 사 비 : • 투 자 비 : • 주민자부담 : • 보 조 금 :			

「속초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제5조,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속초시장 귀하

구비 서류	1. 공사계약서 사본 1부 2. 수요자 부담의 주민분담금 중 시 보조금을 제외한 주민자부담 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 사본 1부. 3. 시공감리필증이나 준공검사 조서 등 공사 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4.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임장
-------	---

사업검토 보고서

☐ 사업개요

- 사업명 :
- 사업목적 :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 보급확대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가 구 수 :
 - 공급배관 : m(ø - m)

☐ 사업비 내역 : 천원(보조금 : 천원, 자부담 : 천원)

- 총 공사금액 :
- 사업자 투자비 :
- 주민 부담금 : 천원(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

☐ 사업검토 결과

-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여부 :
-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
-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